

급여계약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기관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한 이용자의 알권리 제공

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2. (계약기간)

가. 제8조에 따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나.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3. (계약변경)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계약해지)

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2) 입소계약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4)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5)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는 경우

다만,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5. (퇴소)

가. 시설장은 이용자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개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의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기쁨의동산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기쁨의동산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이용자는 퇴소 시 정산된 이용료를 기관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6. **(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기쁨의동산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7.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기쁨의동산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다. 이용자의 주소 등 변경된 인적사항을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보호자)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할 의무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바. 그 밖에 기쁨의동산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